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58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고동진 · 박충권 · 김승수
이달희 · 최수진 · 박덕흠
서일준 · 인요한 · 성일종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9.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을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 7. (생략) <u><신설></u>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 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9.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 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② ----- ----- ----- ----- ----- -----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
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제2항, 제4
5조제1항·제2항 또는 제
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
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2항, 제4
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제45조제1항·제2항-----

나. 제45조제1항-----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
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삭 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
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삭 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
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

<u>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한다)</u> 4. ~ 10. (생 략) ③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